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96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 제38조제2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6. 13

다. 회 부 일 :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필요한 일부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산업·경제적 기반도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 제2항제11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 제38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 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지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¹⁾ 등의 연구기관이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임.

1)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함.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함.²⁾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문화재 복원사업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

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공여구역”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의미함.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의미함.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이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함.³⁾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3) 「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계획을 제출받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함.⁴⁾ 이에 따라 2008년에 확정되고 이후 2024년까지 21회 변경된 발전종합계획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43개 읍·면·동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9조 1,956억원(국비 4조 9,298억원, 지방비 6조 7,521억원, 민자 37조 5,137억원) 규모의 사업 570건을 포함하고 있음. 주요사업은 도로, 공원, 문화복지, 산업, 관광, 기반시설 등 확충 및 지원임.

개정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 그간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반환공여구역 등이 지자체의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인해 개발

4) 「미군공여구역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상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공여구역주변지역 165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

이 더딘 점⁶⁾을 고려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타나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 확대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수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제범위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이]

(단위: 건, 조원)

구분	면제 건수	규모
2005	3	0.7

6) 미군반환공여부지 69곳(면적 1억 4,200만㎡) 중 실제 개발이 완료된 곳은 부산 캠프 하야리아와 의정부 캠프 시어즈 2곳뿐이며, 부분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곳을 포함해도 7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62곳은 대부분 빈터로 방치된 채 단혀 있거나 한국 군부대 부지로 쓰이고 있음
- 구자문, 안병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현황 및 이슈 연구-포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제21권 제3호(2024. 12)

구분	면제 건수	규모
2009	30	26.0
2014	40	14.5
2019	47	36.0
2020	31	30.0
2021	31	10.5
2022	26	17.2
2023	28	12.0
2024	39	17.4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현행법에서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⁷⁾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있음.⁸⁾

7)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7. (생략)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생략)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8)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경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유사 요구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개별법에 따른 지원 체계를 별도 운영 중이므로 신중검토 입장임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분야	사업명	총사업비	면제 사유
2020	기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100	10호
2020	기타	그린스마트 스쿨	43,615	10호
2020	기타	전선지중화	20,000	10호
2020	기타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구축·운영	3,642	10호
2020	기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8,506	10호
2020	기타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10,539	10호
2020	기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1,000	10호
2020	기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96,630	10호
2020	기타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5,918	10호
2020	기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6,634	10호
2020	기타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1,200	10호
2020	기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6,830	10호
2020	기타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7,454	10호
2020	SOC	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2,356	10호
2020	기타	스마트 생태공장 육성	1,677	10호
2020	기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7,050	10호
2020	기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1,000	10호
2021	기타	청년 월세지원 사업	3,003	10호
2021	건축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2,087	10호
2021	건축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	1,326	10호
2021	건축	서부산의료원 설립 사업	2,187	10호
2022	SOC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137,584	10호
2023	기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통합돌봄서비스	3,074	10호
2023	기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5,812	10호
2023	기타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7,892	10호
2023	SOC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 건설사업	25,768	10호
2023	R&D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6,161	10호
2023	R&D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19,314	10호
2024	기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14,677	10호
2024	기타	신도시 리츠(기금 출자)	59,000	10호
2024	SOC	국도45호선(용인 이동~남동) 건설	8,843	10호
2024	건축	경북대 의대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	874	10호
2024	R&D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7,292	10호
2024	R&D	이공계 대학원 학생인건비 지원	9,790	10호
2024	R&D	팬데믹 대비 mRNA 백신개발 지원	5,483	10호
2024	R&D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11,971	10호
2024	R&D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9,743	10호

자료: 기획재정부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략)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
③ ~ ⑤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5